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 552

2017.1.25.(수)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박한범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17년 1월 6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월 18일

-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ㆍ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박한범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했던 조문이 「주거기본법」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변경 개정되어 각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O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위한 개정

나. 주요내용

○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했던 '주택종합계획의 수립'을 「주거기본법」의 '주거 종합계획의 수립'으로 변경(안 제2조)

- O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3조)
- 30년 이상 경과된 60㎡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4조)
-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했던 '주택정책심의위원회'를 「주거기본법」의 '주거 정책심의위원회'로 변경(안 제5조)
- O 성별, 지역별 균형을 맞춘 위원 구성(안 제6조)
- O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(안 제8조)
- O 위원의 수당 및 여비 규정(안 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근거법령이 「주택법」에서 「주거기본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 개정에 맞게 변경하며,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, 30년 이상 경과된 60㎡이하의 소형공동주택(아파트) 단지의 공용시설의 관리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,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하고 구성에 있어 지역별,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법개정과 저소득층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| 의안번호 | 제 552 호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 결 | 2017년 1월 일 |
| 연 월 일 | (제353회) |

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발 의 자 | 박한범 의원 등 7인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17년 1월 6일 |

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박한범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2

발의연월일 : 2017년 1월 6일

발 의 자: 박한범, 김학철, 연철흠,

박봉순, 이언구, 최병윤,

임병운

1. 개정이유

○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했던 조문이 「주거기본법」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변경 개정되어 각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
O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위한 개정

2. 주요내용

- O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했던 '주택종합계획의 수립'을 「주거기본법」의 '주거종합계획의 수립'으로 변경(안 제2조)
- O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3조)
- O 30년 이상 경과된 60㎡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4조)
- O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했던 '주택정책심의위원회'를 「주거기본법」의 '주거정책심의위원회'로 변경(안 제5조)
- O 「양성평등법」에 따른 특정 성별의 제한(안 제6조)
- O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(안 제8조)
- O 위원의 수당 및 여비 규정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주거기본법」,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,

「공동주택관리법」,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,

「주택법」,「주택법 시행령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관계없음.

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

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주택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거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주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주거종합계획의 수립

- 제2조(주거종합계획의 수립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「주거기본법」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
 - 가.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
 - 나. 주택・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
 - 다.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
 - 라.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
 - 마.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- 바.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사. 「주거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 조에 따른 유도주거 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
- 아.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
- 자. 「주거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
- 차.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2. 연도별 주거종합계획
 - 가.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 - 나.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
 - 다.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
- 제3조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도지사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「주택법」에서 하자보수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, 시장·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. 다만,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.
- ③ 도지사는 시장·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

- 제4조(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시·군에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단지 안의 어린이 놀이터,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2. 단지 안의 장애인,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
 - 3. 단지 안의 주민 공동이용 시설 개·보수
-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60㎡ 이하 소형공동주택(아파트) 단지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 적용한다.

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

- 제5조(충청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) 「주거기본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주거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역별,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당연직 : 주택건설관련 국장
 - 2. 위촉직 :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이내,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명 이내

- 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
 - 3. 「충청북도 주택 조례」의 개정에 관한 사항
 - 4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·변경 또는 해제 (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- 5. 그 밖에 도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·공급·거 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제8조(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11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주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- 제12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.
- 제13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보칙

- 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) 「주택법」제 20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할 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 미리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, 「주택법 시행령」제37조에서 "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"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주거기본법

- 제6조(시·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·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·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, 연도별 시·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·도 주거종합계획이 전합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·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·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·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·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·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주거 종합계획 수립·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⑤ 시·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.
- 제9조(시·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) ① 시·도 주거종합계획 및 「택지개발 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·변경 또는 해제(지정권자가 시 ·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,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② 시·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주거기본법 시행령

- 제3조(시·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 다)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과한 사항
 - 3.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 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·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·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시·도의 추진계획에 관 한 사항
- 제11조(시·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주거 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
-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관계 공무원
 - 2.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
 - 3.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시·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법 제6조에 따른 시·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 - 2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·변경 또는 해제 (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제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- 3.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(해당 시·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로 한 정한다)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
- 4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·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도록 한 사항
- 5.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·공급·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·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⑤ 시·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·임명·위촉·제척·기피·회 피·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,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, 그 밖에 시·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공동주택관리법

- 제32조(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)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 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 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1.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- 2.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 자로 선정된 사람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1. 방범교육: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
 - 2.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: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
 - 3.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: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
- 제33조(안전점검)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

하기 위하여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, 세대수, 안전등급,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1.19〉

-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·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(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,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 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,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,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,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4조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 - 1.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2.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
 - 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- 제2조(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) 「공동주택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각 호와 같다.
 - 1.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 - 2.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 - 3.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)의 공동주택

4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

□ 주택법

- 제20조(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) ① 사업주체(리모델 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(「건축법」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(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)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・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- 1.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
 - 2. 임대주택의 건설 · 공급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사(이하 "인수자"라 한다)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·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 - 1. 특별시장,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: 관할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(「건축법」 제11조 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신청 사실을 특별시 장,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 자 지정 요청
 - 2.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: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
-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,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

로 본다.

- 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(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)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, 그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(「건축법」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)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한다.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.

□ 주택법 시행령

- 제37조(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)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 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 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

1.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

○ 「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」제4조에 따라, 3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60㎡이하 소형공동주택(아파트) 단지의 공용 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도비 지원 가능

2. 비용추계 결과

가, 전제

- 충청북도내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(아파트) 대상은, 166단지 560동 15,947 세대임 ('16.12.31.기준)
-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(아파트) 중 60㎡이하 소형공동주택 (아파트) 관리비용 지원대상 단지는 전체 대상단지의 30~50%(노후정도가 심한단지 우선) 이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함.
- 비용부담은 도비 30%, 시군 및 **자담** 70%

나, 비용추계

○ 2018년 기준, 연간 300~510백만원 소요

3. 부대의견

○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전제가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

〈연도별 비용 추계표 1〉

| 구 분 |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지원 | 단지 | 10 | 10 | 10 | 10 | 10 |
| · | 동수 | 34 | 34 | 34 | 34 | 34 |
| 대상 | 세대 | 957 | 957 | 957 | 957 | 957 |
| 도비지원 | 30% | 300 | 300 | 300 | 300 | 300 |
| (백만원) 70% | | 700 | 700 | 700 | 700 | 700 |
| 총 지원금액(백만원) | | 1,000 | 1,000 | 1,000 | 1,000 | 1,000 |

[※] 단지당 100백만원 기준, 전체단지의 30%정도 5년간 지원 기준으로 산정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2〉

| 구 분 | 구 분 | | 구 분 2018년 2019년 |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지원 | 기의 단지 | | 13 | 13 | 13 | 13 | |
| · | 동수 | 45 | 45 | 45 | 45 | 45 | |
| 대상 | 세대 | 1,276 | 1,276 | 1,276 | 1,276 | 1,276 | |
| 도비지원 | 30% | 390 | 390 | 390 | 390 | 390 | |
| (백만원) | (백만원) 70% | | 910 | 910 | 910 | 910 | |
| 총 지원금액(백만원) | | 1,300 | 1,300 | 1,300 | 1,300 | 1,300 | |

[※] 단지당 100백만원 기준, 전체단지의 40%정도 5년간 지원 기준으로 산정

〈연도별 비용 추계표 3〉

| 구 분 | 구 분 |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지원 | 단지 | 17 | 17 | 17 | 17 | 17 |
| · · | 동수 | 45 | 45 | 45 | 45 | 45 |
| 대상 | 세대 | 1,595 | 1,595 | 1,595 | 1,595 | 1,595 |
| 도비지원 | 30% | 510 | 510 | 510 | 510 | 510 |
| (백만원) | (백만원) 70% | | 1,190 | 1,190 | 1,190 | 1,190 |
| 총 지원금액(백만원) | | 1,700 | 1,700 | 1,700 | 1,700 | 1,700 |

[※] 단지당 100백만원 기준, 전체단지의 50%정도 5년간 지원 기준으로 산정

O 도내 30년 이상된 공동주택(아파트) 현황

| 시군명 | 단> | 지수 | 동수 | | 세대수 | | 비고 |
|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|
| | 16 | 66 | 560 | | 15,947 | | |
| | 의무 | 비의무 | 의무 | 비의무 | 의무 | 비의무 | |
| | 14 | 152 | 244 | 316 | 7,463 | 8,484 | |
| 청주시 | 7 | 92 | 128 | 219 | 3,533 | 6,337 | |
| 충주시 | 4 | 15 | 58 | 35 | 2,490 | 544 | |
| 제천시 | 2 | 17 | 50 | 17 | 1,140 | 729 | |
| 보은군 | | 3 | | 4 | | 129 | |
| 옥천군 | _ | _ | _ | _ | _ | _ | |
| 영동군 | | 1 | | 2 | | 48 | |
| 증평군 | | 12 | | 20 | | 374 | |
| 진천군 | | 11 | | 18 | | 293 | |
| 괴산군 | | 1 | | 1 | | 30 | |
| 음성군 | _ | _ | _ | _ | _ | _ | |
| 단양군 | 1 | | 8 | | 300 | | |

○ 작성자

-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장 김 학 두